

損害保險市場의 構造分析과 料率政策方向

柳 根 沃

(大邱大教授・保險學博士)

◀ 目 次 ▶

- I. 序 論
- II. 保險市場規制의 適正水準
- III. 保險市場의 規制에 대한 經濟理論
 - 1. 規制의 論理와 그 限界性
 - 2. 自由競爭의 論理와 그 限界性
 - 3. 不完全競爭과 保險市場
- IV. 保險產業에 있어서 規制政策의 類型과 料率規制
- V. 韓國損害保險市場의 構造
- VI. 損害保險料率에 대한 政策方向

I. 序 論

韓國의 保險市場 및 金融市場이 개방되고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제시 가운데 많은 것은 規制政策과 自律化 政策의 이론적 정당성과 그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인 規制政策을 고수 내지 지지하려는 측이나 市場自由化를 주장하는 측이나 모두가 소비자인 保險加入者의 이익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험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상반된 정책주장의 배경에는 그러한 학자들이 어디에서 공부하였으며 현재 어디에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데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대륙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자율적인 市場競爭의 이점은 수긍하되 전반적으로 規制化政策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학문을 한 학자들은 규제 필요성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개방과 자율화정책에 근거한 競爭政策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현재 보험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MIT대학교의 엠스텐교수도 우리나라의 經濟政策은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적 큰 목소리에 의한 開放 및 競爭政策을 지향하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産業化 段階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오히려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율경쟁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規制措置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

保險市場에 대하여 規制政策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自律化政策을 추진하여야 하느냐 하는 양자택 일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다. 보다 의미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構造가 어떠하며 여러가지 보험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어떻게 시장 구조가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규제적 요소와 경쟁적 요소를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이론적으로 말하는 完全競爭市場도 존재하지 않고 完全規制市場도 존재하기 힘들다. 다만 어느 나라의 시장이든 완전경쟁과 완전규제가 양극단을 이루는 연속선(continuum)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損害保險市場構造를 검토하여 향후 保險料率政策이 추진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한 결론은 손해보험요율은 보다 경쟁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립적인 料率算定團體에 의한 권고요율의 산정과 이를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간의 경쟁적인 요율제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保險料率算定에 핵심이 되는 充分한 情報의 수집과 多數의 法則을 감안하여 중립적인 料率算定團體에 의하여 신빙성있는 권고요율이 산정될 때 요율산정의 비용이 절감되므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더욱 용이하여지고 보험시장은 보다 효율적인 경쟁으로 발전될 것이다.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保險開發院의 중립성 문제도 재고되어야 한다.

II. 保險市場規制의 適正水準

保險市場에서 規制와 競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保險料率은 規制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장에서 競爭이 허용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가져오는 이점과 규제가 가져오는 이점을 조합함으로써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最適의 方法을 찾아야 한다. 즉 경쟁 혹은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最適配分으로 料率算出過程에 관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보험시장의 구조 등 여러가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料率政策이 가져오는 經濟的 利點(benefits)을 極大化하도록 적정규제수준(α^*)을 찾아야 한다.

$$\text{Max } B[M(a)] \dots\dots (1)$$

$$\al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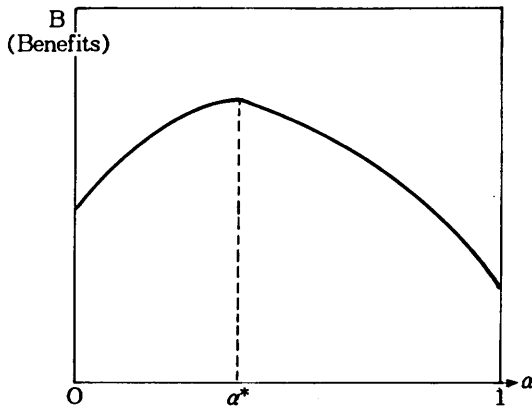
$$\text{subject to } M = \alpha R + (1-\alpha)C$$

수식(1)에서 경제적 이점 B는 보험시장의 구조인 M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M은 規制의 強度를 나타내는 가중치 α (i.e. $0 < \alpha < 1$)에 의존하며 α 는 정책당국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 R은 완전규제(perfect regulation)시장을 나타내며 C는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시장을 의미한다. <그림-1>에서와 같이 정책당국은 B값을 극대화하는 適正水準의 規制(α^*)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실제적인 保險市場에 대한 정책이 消費者들의 利益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經濟的 效率性을 지니기 위해

1) 매일경제신문, 1992. 2. 19자 5면을 참조할 것.

(그림-1) 適正水準의 規制



서는 그러한 정책이 市場環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시장의 구조 및 환경에 대한 진단없이 보험의 특성상 규제정책이 옳으니 경쟁으로의 유도정책이 타당하니 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교과서적인 주장에 그치기가 쉽다. 規制와 競爭의 最適組合을 찾기 위하여 정책 당국자들은 競爭市場과 規制市場이 갖는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장에서는 경쟁과 규제의 理論的 正當化(justification)에 대하여 검토한다.

Ⅲ. 保險市場의 規制에 대한 經濟理論

최근 많은 경제학 문헌에서는 규제와 자율화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常時的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및 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즉 하나의 「動的인過程 : dynamic process」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금세기초의 극단적인 자유주의경제이후에 1930

년대의 재정위기는 政府의 介入과 規制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끔 하였다. 이때 경제학자들은 福祉經濟學(welfare economics)을 개발하여 「公共利益理論(public interest theory)」을 내놓았는데 이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규제 및 정부의 간여에 대한 여러 유형과 그 정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현상은 官僚主義의 심화, 정부예산의 거대화 및 財政赤字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에 반대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힘이 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規制緩和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일반화되게 되었으며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소위 「公共選擇理論(public choice theory)」이라 알려진 것이다.

「公共利益理論」에 대한 주요 비판 중의 하나는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市場失敗를 정부가 고쳐줄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공공이익이론」에 의하면 정부는 獨立의이면서 中立的이며 모든 이익간의 갈등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며, 일반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인도된다고 한다. 自由市場體系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규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나, 公共選擇理論을 주장하는 학자들²⁾은 규제는 業界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서 그 業界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고안되고 운영된다고 한다. 즉 私企業의 힘으로부터 일반공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업이 공공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있는 사적이익집단에 의해서 정부를 이용하

2) Stigler(1971) 등을 참조할 것.

게 되는 것이 규제라고 한다. 이와 같이 公共利益理論에 기초하여 많은 保險規制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반면에 公共選擇理論의 적용을 통하여 規制緩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보험영업활동은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안정성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규제는 安定性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지만 또한 效率性의 커다란 감소를 초래한다.

「公共利益理論」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제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유시장경제가 희소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는 가설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市場失敗(market failure)의 유형에는 (i) 공급과 수요 사이의 非對稱情報(asymmetric information) 혹은 情報隔差(information gap)로 인한 不完全競爭, (ii) 道德的 危險(moral hazard)과 같은 外的 效果(external effects), (iii) 가격결정과 생산의 硬直性을 지닌 公共財貨(public goods), (iv) 自然獨占을 유발하는 規模의 經濟(increasing economies of scale)³⁾, 그리고 (v) 幼稚産業이나 構造的으로 脆弱한 産業 및 상당히 영업의 週期性을 가진 産業에서의 破壞的인 競爭 등이 있다.

다음에는 이상과 같은 경제적 논리를 근간으로 규제론자들과 규제완화자들간에 보험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政策的 論難이 있는데 양측의 논리와 그 한계성을 분석하고 不完全 競爭市場에서의 경쟁의 효율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規制의 論理와 그 限界性

自由競爭原理의 도입을 제한하려는 학자들은 보험시장 특유의 不完全性을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독일학자인 Farny의 주장⁴⁾에 의하면 보험시장은 不完全市場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保險生産과 需要 및 供給의 特殊性 때문에 완전자유경쟁의 원리가 보험시장에서 실현되고 적용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Farny가 주장하는 保險市場의 不完全要因 중 중요한 것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保險約款만을 보면 保險商品이 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보험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의한 支拂能力(solvency)이 다르고 또한 補償處理過程(신속, 친절한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시장은 完全競爭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특성은 보험산업에 局限된 것은 아니다. 기업의 破産危險理論이나 代理人理論⁵⁾에 의하면 보험과는 달리 有形的 商品이라 할지라도 생산자 혹은 공급자의 破産危險에 따라 동질의 상품이 서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성능, 동일한 모양, 그리고 동일한 색상을 가진 자동차를 H회사와 K회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H회사는 파산위험이 거의 없고 K회사는 파산위험이 높다고 가정해 보자. 자동차 자체의 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H회사의

3) 보험분야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일치된 결론은 없다. Henri Louberge 편저(1990) Berghe의 논문을 참조할 것.

4) Farny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국내에 소개한 조해균 교수의 논문을 참조할 것 : 보험학회지 제31집 및 제33집 그리고 보험개발연구 제3호(1991).

5) Jensen M. C. and Meckling W. H. (1976)을 참조할 것.

자동차와 K회사의 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수요된다고 일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H회사의 자동차를 선호하게 된다. 그 이유는 K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K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補修維持(부품조달 등)에 있어서 H회사의 자동차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또한 중고차로 타인에게 파는 경우에도 부품조달의 곤란 등으로 보수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K회사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밖에 없다. 장래의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이나 당장 제품이 가시화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의 경우나 모두 마찬가지로 생산자의 破産危險과 관련, 검토해보면 계약이나 제품 자체는 동질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보험시장 고유의 不完全性 要因으로 특별히 제기되어 市場競爭의 原理가 적용되거나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保險需要者는 어느 특정한 보험회사나 그 회사의 代理人 또는 販賣社員과 개인적 親分關係나 人間關係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보다도 신용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특정한 보험자만을 선택하여 그의 위험을 부보시키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 사이에는 人的 優越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은 자유경쟁이 불가능한 不完全市場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생산과 성장 위주의 經濟政策에 치중해야 하는 나라에서 保險이라는 經濟制度에 대한 인식부족과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서 保障性 商品보다는 貯蓄性 商品이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하

여 반강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일리가 있다. 특히 保險產業이 정부의 보호규제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개발이나 서비스의 개선 등에는 소홀히 한 채 보험산업이 經濟開發을 위한 內資動源의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거나 정부정책이 보험회사의 過多利潤을 비호해온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人的 優越性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보험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保險環境의 後進性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短期的이며 過渡期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이 되고 보험도 綜合 金融化되어가는 시점에서 개인적 친분관계나 인간관계에 기초한 인적 우월성의 존재가 보험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金融市場이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게 방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한 보험회사가 信用이 있다고 막연히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적 우월성의 존재를 이유로 보험시장이 不完全하다는 주장은 일시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 없다.

세째, 保險需要者들은 市場洞察力이 결여되어 있고 통찰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시장은 불완전하며 경쟁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保險約款은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든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⁶⁾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조항은 商法

혹은 民法에 기초한 전형적인 규정이며,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特別條項은 많지 않기 때문에 타회사의 유사한 상품과 골자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洞察能力이 있더라도 여러 상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은 보험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사더라도 각 TV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파악한 후 가격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여 구매하기보다는 몇가지 중요한 기준 즉 화면의 크기나 특별한 기능 등을 토대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또한 여러 상품을 다 비교하려면 많은 shopping cost(시간, 경비 등)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의 비교검토를 위한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시장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市場洞察力의 문제도 보험시장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네째, 시장조건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무한한 적응력의 존재는 完全市場의 하나의 前提條件이며, 보험시장에 있어서 보험수요자나 보험자는 이러한 適應能力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은 본질적으로 完全競爭原理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適應力 缺如의 문제도 보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시장에 완전경쟁의 원리가 부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일반시장에는 價格變動에 의하여 공급량이 조정되지만 보험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보험시장에서는 자율

적인 供給의 價格彈力性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급량은 주로 需要의 價格彈力性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경쟁의 調整原理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서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被保險者의 손실 발생 위험도가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공급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危險度에 상응하는 높은 보험료나 그 이상의 가격에 대하여는 보험상품을 공급할 것이다. 또한 보험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언더라이팅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판매된 보험상품은 보다 높은 損失豫定率(혹은 한계비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면, 보험상품을 대량생산하는 경우에 純保險料로 표시되는 基本生産原價, 즉 豫定損失額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재무구조의 변동(혹은 악화)에 의한 金融費用 및 代理人費用(agency costs) 등은 증가하기 때문에 限界生産費用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供給曲線은 우상향의 곡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상품도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保險의 供給問題와 관련하여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보험은 그 생산 및 공급이 용이하고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어진 일정한 資本金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보험을 판매하면 資本構造의 惡化로 支拂不能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資本構造가 좋은 회사의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경고 혹은 제재가

6) 보험약관에 대하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조차 약관의 표준화 경향이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약관이 너무 복잡하여 상품간 가격비교가 어렵다. Finsinger and Pauly(1986), pp. 2~3을 참조할 것.

예상되므로 새로운 資本金의 增額이나 再保險 등과 같은 資產負債의 綜合管理(asset-liability management)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무제한적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상품의 판매에서 生産施設의 확충이 없이는 제품의 공급을 무한정으로 늘일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이상에서 Farny 교수가 주장하는 保險市場의 不完全과 그 要因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보험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에서 연유된 것은 별로 없으며, 따라서 보험시장의 특수한 不完全性 때문에 경쟁원리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보험시장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規制의 論理는 Farny와는 다른 각도에서 (e.g. 大數의 原理 등) 모색되어야 한다.

Farny의 학설을 국내에 소개한 조해균 교수는 “보험시장은 타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不完全市場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험생산의 容易性和 판매의 困難性 때문에 보험시장에서는 完全自由競爭의 原理를 도입 실시하는데 제약과 한계성이 있으므로 有效競爭의 원리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의 조건을 다 갖춘 시장은 어느 제품의 경우나 존재하지 않으며, 비록 완전경쟁은 아니더라도 「完全競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의 效率의 配分과 適正價格의 형성」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다 주는 不完全競爭의 시장조건이 有效競爭(workable competition)이며, 이러한 有效競爭으로 보험시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2. 自由競爭의 論理 및 그 限界性

保險市場의 自由競爭化 政策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기존 보험사들이 過剩保護되면 보험시장이 獨寡占化되며 자원의 배분과 생산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업들은 적정이윤 이상의 超過利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적정하다고 여기는 福祉(social welfare)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完全自由競爭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有效競爭의 여건을 조성하여 완전경쟁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효율성의 성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효경쟁을 보장하는 여러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또한 많은 自由競爭論者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는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기업을 보호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규제는 역설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이 실제로 시장에서 규제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市場構造의 검토가 때때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美國 州政府保險法은 규제의 목적을 그 첫 章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⁸⁾

본장의 목적은 保險料率을 규제하여 그것이 過

7) 조해균 (1991), p. 7을 참조할 것.

8) Peter A. Lefkin (1988), p.419를 참조할 것.

度하거나, 不適切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差別的이지 않도록 하여 공공복지를 증대시키고, 효율산정에 있어서 보험회사간에 협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규율하는데 있다. 본장의 어느 규정도 (1) 합리적인 競爭을 막거나 억제하거나, 혹은 (2) 상기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料率, 料率體系, 料率計劃 혹은 실행의 統一성을 막거나 아니면 조장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美國 州政府保險法の 일차 목적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데 있다.⁹⁾ 경쟁시장가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면 거래 당사자 양측의 富는 변동되지 않는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잘못된 情報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競爭市場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保險分野에서는 平均損失을 예측함에 있어서 大數의 法則 (law of large numbers)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법적규제에 의하여 損害發生에 대한 자료를 공동으로 충분히 수집하여야 보험의 適正價格化를 위한 보다 정확한 情報가 생산될 수 있다. 통계학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샘플(sample)이 더 크고 더 표본적일수록, 그것에 기초한 예측이 정확할 확률은 더 커진다. 보다 광범위한 수리통계적 자료는 특정한 保險種類와 관련된 損失과 費用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게 한다.

거의 예외없이, 한 회사의 단독적인 자료는 「수리 통계적으로 건실한 料率」을 산정하는데에 충분한 통계적 증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와 함께 자료를 共同化(pooling)하여야 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統計報告機關¹⁰⁾을 설치하여 損失資料 및 損失調整費用을 모아서 보험회사와 보험규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연합은 보험회사, 정부규제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처럼 보험을 통한 社會的 厚生 (social welfare)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自由 競爭原理과 法的規制는 相互補完的으로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競爭의 原理의 규제에 의한 獨寡占 企業들의 不當利潤과 資源配分 및 생산의 非效率性을 제거해 나가야 하며, 規制化措置는 보험의 특수한 기능과 신빙성 있는 정보의 창출 및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보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不完全 競爭과 保險市場

보험은 그 기능의 特殊性 때문에 시장의 완전자유경쟁에 맡겨져 있지는 않지만, 相當히 競爭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 시장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 중의 하나가 不完全 혹은 獨占的競爭(imperfect or monopolistic competition)모형이다.¹¹⁾ 이러한 모형은 獨占모델과 完全競爭모델의 중간에 위치해 있

9) 예를들면 미국 New York州의 보험법은 그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지를 증대시키고, ..., 보험회사간의 가격경쟁을 증대시키며 경쟁시장조건에 부응하는 요율을 제공하고, ..., 보험회사간에 협조적 행동을 하면서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 York Insurance Law, Clause 2301, McKinney(1985)를 참조할 것.

10) 미국에서는 Insurance Service Office(ISO)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수집하여 권고요율(advisory rates)을 만들며, ISO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은 권고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특정한 사업과 비용을 보험업계의 평균치와 비교한 후에 개별적인 판매전략에 따라 권고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P.A. Lefkin(1988)을 참조할 것.

지만 실제로는 競爭모델에 近接해 있으면서 완전 경쟁의 일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조건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모델이다.

不完全 競爭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어느 정도의 제품의 差別化(some product differentiation)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판매자를 고를 수 있다. 이러한 약간의 市場力(market power)때문에 기업의 需要曲線은 약간 하향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러한 製品差別化는 제품 그 자체가 실제로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단순히 商標의 이미지 때문에, 아니면 판매자의 지역적 위치(sellers locations)에 따른 편리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시장으로서의 進入이나 시장에서의 脫退가 자유롭다. 정상적인 이윤 이상의 超過利潤이 產業界에 존재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 셋째, 개별기업 간에는 相互依存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企業도 다른 경쟁자에게 영향을 줄만큼 커다란 市場占有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기업은 단지 시장의 많은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적인 압력을 느낀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하여 보험시장을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 保險商品은 약관의 조건에 의해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시장에 내놓은 保險商品의 가치는 해당 보험회사의 財政的 健實度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相異한 보험공급자 및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게 마련이므로 서로 다른 제품은 완전한 代替品(perfect substitutes)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隣近의 保險會社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편리(e.g. loyal clientele in the neighborhood)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다른 보험회사로부터의 지속적인 競爭(steady competition)의 힘이 작용한다.¹³⁾ 다른 한편, 보험시장에는 많은 상품공급자가 있으며, 市場進入이 比較的 容易하다.

단기적으로 不完全競爭의 보험시장에서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需要曲線이 平均費用曲線위에 놓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생산량 Q_s 에서 短期超過利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산업에서 초과이윤의 발생을 목격하면 신규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보험의 需要曲線을 하향시키면서 결국에는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비용곡선과 접하게 되면서 하향은 정지될 것이다. 신규업체들이 이 점점에서 기존기업과 동일한 費用條件을 가지게 되므로 需要曲線이 더 이상 하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3〉에서 수요곡선은 비용곡선 위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超過利潤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회사는 생산량 Q_L 즉 限界費用과 限界收入이 일치하는 점에서 競爭的 利潤만을 얻으며 지탱할 것이다. 이와 같이 不完全競爭모델에서는 신규진입비용이 장기초과이윤을 제거하고 均衡(equilibrium)에 도달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수요곡선의 높이

11) D'Arcy and Doherty(1988), pp. 13~15를 참조할 것.

12) W. G. Shepherd(1985), pp. 57~59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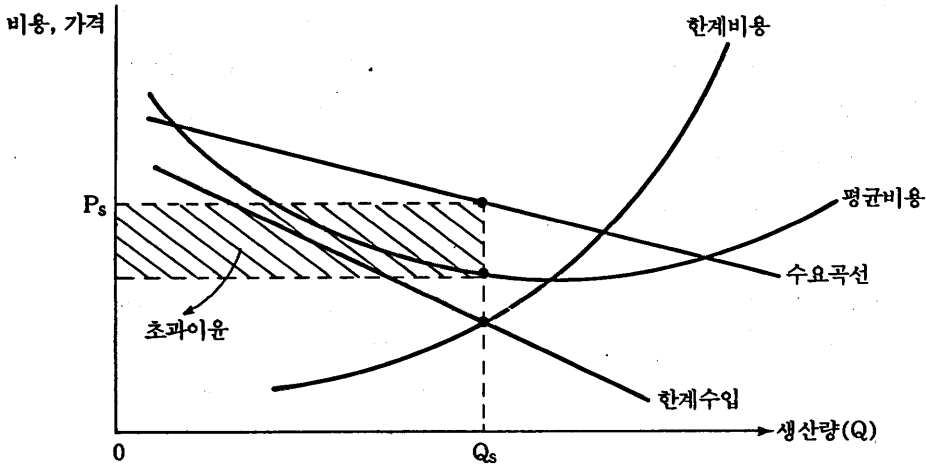
13) 예를 들면 대구생명보험(주)는 지리적 편리함으로 인하여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쉽게 고객으로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 경쟁으로 광주생명보험(주)에 영남에 거주하는 친분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와 탄력성에 따라 이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균형상태에서는 다만 正常利潤만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해당기업은 그의 주주들에게
경쟁적인 수익률을 전해줄 수 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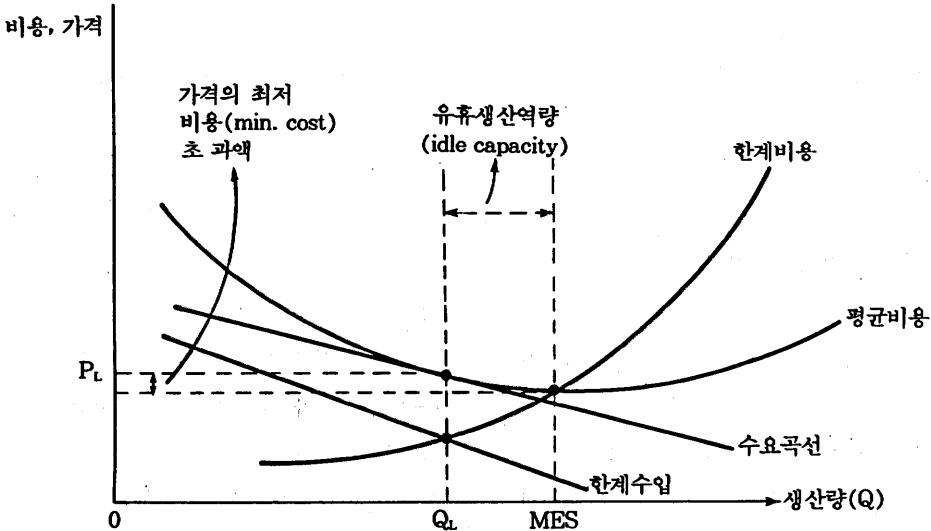
〈그림-2〉

獨占的 競爭市場에서의 短期超過利潤



〈그림-3〉

獨占的 競爭市場과 長期均衡



따라서, 하나의 규범적인 관리 혹은 정책지침으
로서 기업의 價格政策은 진정으로 長期利潤極大
를 시사해 주게 된다. 競爭價格이 관리 혹은 정책
의 목표는 아니지만, 정책결정에 기준점(bench-

mark)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점은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하여 계약을 늘
이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기존시
장에서 탈퇴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資本을 일으

키거나 아니면 현재자본을 이동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意思決定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의 價格規制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경쟁가격은 規範的인 目標로서 작용한다. 보통 규제의 목표 중 하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경쟁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에 공정(fair)하며 과도하지 않은(not excessive) 收益率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不完全競爭市場은 純粹自由競爭市場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차이점(deviations)이 있다.

첫째, 최저효율규모(MES ; Minimum Efficiency Scale)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완전경쟁하에서보다 가격과 비용이 불완전경쟁하에서는 약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i) 보다 높은 가격과 (ii) MES보다 적은 Q_L 에 의하여 보여진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추가로 부담하는 가격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된 비용은 쓸모없는 비용(dead loss)은 아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약간 비싸게 自動車保險을 구입하였어도 가격이 약간 싼 도시로 시간을 들여 가야 하는 것보다는 「편안함」이 있으므로 추가된 비용은 편안함과 상쇄된다.

두번째 차이는 불완전경쟁하에서는 기업의 生産力量이 완전가동되지 않고 일부가 쉬게 된다. 제품생산량 Q_L 은 MES보다 적기 때문에 기업의 生産能力의 일부(즉 $MES - Q_L$)는 쉬게 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고객을 가지고 싶어할 것이다.

IV. 保險產業에 있어서의 規制政策의 類型과 料率規制

保險產業에 있어서 여러 규제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破産을 방지하고 보험구입자인 消費者의 利益을 보호하는데에 있다. 즉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損失發生의 危險을 보험료의 先納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轉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장래 지불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격(요율)규제(price regulation), 책임준비금 규제(reserve regulation), 보험사 설립의 최저자본금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 보험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규제(regulations on insurance contract)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相互關連性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에 대한 근거는 責任準備金規制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적절한 책임준비금의 확보는 料率規制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인 경우 투자자인 주주들이 제공하는 資本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낮은 보험료라 할지라도 상쇄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支拂不能의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본금은 破産危險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剩餘金(surplus)이라고도 부른다. 보험회사의 지불불능은 장래의 不確定 損失發生額(L)이 선수보험료(P)와 자본금(S)의 미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지불능력의 확률(prob.)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Max}_{(P, S)} \text{Prob} \{ \tilde{K}_r = (P+S)(1+\tilde{r}) > \tilde{L} \} \dots (2)$$

위 수식 (2)에서 K_r 은 危險資本金(risk capital)으로서 당초 投資財源인 수입보험료와 자본금 즉 $P+S$ 가 미래의 불확실한 投資收益率(r)에 의해서 축적되는 자산이다. 여기에서 보험회사 혹은 정부 규제자들은 P 혹은 S 의 수준¹⁴⁾을 시장구조와 경제 환경에 맞추어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가지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資本形成이 취약하여 자금(e.g. 수식(2)에서 'S')조달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는 設立資本金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보험료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너무 낮은 요율(too low premium)」의 부과를 억제함으로써 支拂不能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法定資本金 要件을 올리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적은 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獨寡 占利潤을 취하게 마련이다. 설립자본금의 수준을 비교적 낮게 규제하는 경우에 보험료(P)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적정한 보험료(P^*)에 비해 높게 보수적으로 책정하려 하는 것이 규제자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하에서는 보험회사의 支拂不能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어도 반면에 經濟的 效率性은 기대하기 힘들다. 設立資本金 要件과 料率規制를 동시에 강화하면 二重規制效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經濟的 效率性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에 영업실적에 따라 契約者 配當金의 지급을 고안하기도 하지만 資源配分과 生産의 效率性을 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¹⁵⁾ 낮은 자본금요건으로 인하여 점점 많은 보험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게 되면 주어진 요율규제에 서비스경쟁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가 성장되고 資本形成과 아울러 금융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상황에서는 수익적인 資金調達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法定資本金의 수준을 올려도 시장진입의 장벽은 존재하지만 경쟁에 필요한 충분히 많은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위 수식 (2)에서 S 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우 料率自由化를 통한 가격경쟁을 추진하여 보험료가 적정보험료(P^*) 전후로 낮아져도 危險資本金 水準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금이 공여된 기업의 경우 가격경쟁하에 비록 保險料 引下가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기업파산시 富 喪失의 큰 몫이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돌아가게 되므로 무모한 價格競爭은 스스로 제약을 받게 마련이므로 치열한 가격경쟁에 의한 企業破産의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 기업내에 代理人問題(agency problem)가 없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경

14) 신규보험사인 경우에는 최저자본금 요건에 의해서 S 의 수준이 결정되며, 기존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의 관점에서 적절한 채무 대 자본비율 (P/S)에 의해서 S 의 수준이 조정된다.

15) 계약자 배당의 형식으로 보험료를 반환하더라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므로 비효율적이다. 또한 순보험료에 첨가되는 부가보험료(loadings)에 의하여 위험자본금의 수준을 올리면 결국 보험회사는 너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비효율적이며 보험상품에 대한 「購買抑制效果」가 파생되며 기업이윤이 불균등하게 주주에게 크게 돌아감으로써 과다하게 군소업체가 난립하여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영자들은 保險料 決定, 資産運用 등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어야 하며 따라서 과열된 가격인하 경쟁은 무모하여 스스로 억제될 것이다.¹⁶⁾ 價格競爭에 의한 낮은 보험료 하에서도 보험회사가 正常利潤(normal profit)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이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利率自由化가 되는 경우 利率이 상승하는 경제여건하에서는 수입보험료에 의한 투자 자원 확보용 위험선택(cash-flow underwriting)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投資收益率이 상승하면 보험료 산정시 장래 손실지급액의 現在價를 위한 割引利率도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시장에서는 cash-flow underwriting이 지니는 문제가 크지 않다.¹⁷⁾

이상과 같은 논리로 법적으로 요구된 最低資本金 水準이 너무 높아 충분한 수의 기업이 保險市場에 존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資本金 水準은 법적으로 높이고 保險料率은 自律化하는 것이 타당하다.

V. 韓國損害保險市場의 構造

保險市場의 특성상 보험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自由競爭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일부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시장도 不完全競爭이라 하더라도 경쟁의 원리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은 상당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利率政策에 있어서는 경쟁으로서의 유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보험시장이 좀더 경쟁화할 이유를 논하기 위하여 본장에서는 韓國의 保險市場에 대한 構造를 검토하고자 한다.

美國에서는 「서먼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에 의하여 價格引上이나 製品生産의 制限 등에 대하여 기업간에 합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보험의 경우 1945년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하여 企業聯合禁止에 대한 제한적 예외(a limited exemption)를 인정하고 있다.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하면 聯邦政府의 獨占禁止法은 (i) 州政府의 법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은 분야의 保險業에 국한하거나 (ii) 기업의 의도된 행위가 보이콧, 강압 혹은 협박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保險業에 적용된다.

韓國에서도 「獨占規制 및 公定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기업의 共同行爲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同法 제61조에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는 特例를 두고 있다. 또한 保險業法 제17조에서는 보험사업자가 財務長官의 인가를 얻어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相互協定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6)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회피적(risk averse),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및 위험선호적(risk-loving)인 사람으로 나누지만 투자액의 크기에 따라 이러한 성향은 변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면 자기 富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지니지만 사소한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선호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17) 보험시장이 전전한 경쟁으로 유도되어지는 과도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도하게 치열한 가격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립요율산정기관에 의한 권고 혹은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범위요율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共同行爲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特例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이 부당하게 談合하여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는 보험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공급의 제한에 合意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보험공급자수가 많고 다양화되어 있다면 그리고 신규기업들이 용이하게 市場進入을 할 수 있다면 성취하기가 어렵다. 企業談合이 시도되고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다음의 네 가지 市場構造的 特性和 관련된다.¹⁸⁾

첫째, 시장에서 보험회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結託에 관한 合意가 쉽게 도달된다. 둘째, 시장에서 보험회사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기업간 市場占有率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세개의 상위기업만으로도 성공적인 담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셋째, 결탁된 기업들이 합의된 사항을 違反하는 것을 탐지하고 감시하는 것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효과적인 합의를 얻게 될 확률은 더욱 커진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업의 市場進出이 방해되지 않으면 企業結託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완전하게 억제될 수 있다.

1. 市場進入(Entry)의 難易

우리나라에서 保險事業을 하려면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허가시 보험시장의 安定維持와 經濟力集中의 방지를 감안하여야 한다.¹⁹⁾

보험사업은 人保險事業인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損害保險事業인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납입하여야 한다.²⁰⁾ 또한 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事業規模, 資產規模, 市場狀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본금 혹은 기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全國銀行은 250억원, 地方銀行은 30억원(銀行業法 16조)의 最低資本金이 필요하며, 투자금융 및 투자신탁 등 投資機關의 설립에는 5억원(短期金融業法 제4조 및 證券投資信託業法 제12조), 그리고 證券機關의 경우 20억원(證券去來法 제146조)이상의 設立資本金이 필요하다.

게다가 보험사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탁금(보호예탁금)을 保險監督院에 예탁하여야²¹⁾ 하기 때문에 특히 회사설립 초기에 자본금운용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보험사업자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人保險事業과 損害保險事業을 兼營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 市場集中度(Market Concentration)

보험회사간의 부당한 談合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市場集中度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판매를 확대하여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역량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²²⁾ 따라서 판매량 대 생산역량(sales-to-capacity), 즉 수입보험료 대

18) Richard N. Clarke et al. (1988)을 참조할 것.

19) 보험법 제 5조

20) 보험법 제 6조. 1988년말 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人保險인 경우 2억원, 損害保險인 경우 3억원의 설립자본금을 요건으로 하였었다.

21) 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하면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30/100 이상 5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잉여자본금(premium-to-surplus)의 비율 혹은 부채비율(부채/자산) 등 財務構造가 보험회사간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 收入保險料를 기준으로 한 市場占有率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적 비율은 純資産에 관한 자료와

결합이 되어 보험회사의 역량에 기반을 둔 시장점유율 측정(a capacity-based measure of market share)을 가능하게 한다.

〈표-1〉은 韓國損害保險市場의 市場集中度에 관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1〉

損害保險市場의 集中度

연 도	기업수	상위 4개사 시장점유율	허핀달지수(HHI)	부채 대 자산(L/A)비율	
				평균(Avg)	표준편차
1981	13	57.2%	1,619.4%	0.59	0.13
1982	13	56.5	1,579.9	0.58	0.14
1983	13	57.6	1,585.7	0.59	0.19
1984	13	54.3	1,240.3	0.62	0.18
1985	13	54.3	1,163.8	0.68	0.19
1986	13	52.5	1,065.2	0.73	0.23
1987	13	52.2	1,010.3	0.74	0.18
1988	15	50.9	957.9	0.71	0.14
1989	16	52.0	978.3	0.66	0.20
1990	16	53.6	996.9	0.68	0.13

자료 : 보험통계연감, 보험감독원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계산되었으며, 허핀달지수(Herfindahl-Hirschman or HHI)는 보험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市場占有率을 자승(squares)하여 합산한 지수이다. 허핀달지수는 0(극단적인 무집중)에서 10,000%(완전 독점)까지의 범위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기업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각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이하면 상이할수록 더 높은 지수

치를 가진다. 미국 법무성의 1984년도 企業合併指針書²²⁾에 의하면 허핀달지수가 1,000% 이하인 市場은 부당한 이윤을 위한 談合의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韓國損害保險 市場은 1988년 이후 허핀달지수(HHI)가 간신히 1,000 이하로 떨어졌으나 美國損害保險市場의 경우²⁴⁾에 의하면 아직도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22) 수입보험료 대 자본금의 비율, 즉 부채비율이 점점 커지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구조는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므로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자본금의 증액 혹은 재보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3) 보다 자세한 것은 Antitrust Div., U. S. Department of Justice, Merger Guidelines(1984) in Antitrust & Trade Reg. Rep. (BNA) No. 1169, at S-6(Spec. Supp. June 14, 1984)를 참조할 것.

24) 미국손해보험시장의 경우, 허핀달지수는 1983년에 225, 1984년에 226, 그리고 1985년에 229이다. Clarke et al. (1988), p. 383을 참조할 것.

3. 成果(Performance) 分析

어떤 산업분야의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산업전체의 수익성(profitability)이 사용되지만 보험산업의 경우 會計上의 수익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측정이며 무엇보다도 造作(manipulation)의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하게 資金流通(cash flows)을 설명하지 못하는 過去指向的인 測定(retrospective measure)이다.

예를 들면 보고된 회계상의 이윤은 資本評價損益(capital gains or losses)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윤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혹은 아니하기도 한다. 損失發生額(losses incurred)에는 손실은 「발생하였지만 보고되지 않은 분(IBNR)」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損失準備金(loss reserves)을 過多 혹은 過少 積貯하느냐에 따라 이윤의 크기는 기업에 유리하게 조작될 수 있다.²⁵⁾ 다른 한편 회계상의 이윤은 과거의 특정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財政狀況에 관한 모든 情報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회계상의 이윤보다는 企業株式이 市場價(market equity value)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향이 새로이 모색되고 있다.²⁶⁾ 기업주식의 시장가격은 보험회사의 現在 財政成果 뿐만 아니라 豫想되는 去來의 成果를 동시에 포착하는 前向的(prospective)이면서 長期的인 成果測定의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

보험회사의 주식은 上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損害保險會社에 대해서만 株式價格에 의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정이다.

〈표-2〉 産業別 株價指數의 變遷

연도	손해보험산업 주 가 지 수	금융산업(은행) 주 가 지 수	전 체 산 업 종합주가지수
1980	134.25	131.31	108.76
1981	134.84	158.16	126.30
1982	145.08	142.52	122.03
1983	156.42	110.44	127.70
1984	141.70	103.44	131.88
1985	128.25	105.31	138.93
1986	487.25	127.17	227.78
1987	1,641.76	419.46	417.55
1988	2,464.93	982.67	693.14
1989	2,214.87	869.80	918.60
1990	1,604.46	730.18	747.00

(주가지수 기준연도 : 1980, e.g. 지수=100.00(80. 1.4.))

資料 : 대한투자신탁(주) 전산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損害保險産業의 年度別 株價指數는 은행주가지수 및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하여 1980년대 초에는 약간 높거나 비슷하다가 1986년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株式價格의 變動要因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은행 등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保險市場이 추가자본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超過利潤을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保險市場에서 손해보험회사간에 경쟁이 유효하

25)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손실준비금을 과다하게 계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영업성과를 과장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손실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등 그 조작이 가능하다.

26) Lacey(1988) 등을 참조할 것.

게 작용하며 보험회사들이 최저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를 달성하였다면 收入保險料의 증가가 주식의 市場價格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고(e.g. $P=P^*$) 따라서 正常利潤 이외의 超過利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收入保險料의 증가로 주식이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느 보험회사가 과거에 예상외의 큰 손실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가입자들에게 保險料를 인상하여 부과함으로써 과거의 손실을 복구하려고 시도한다면 보험시장이 경쟁적인 한 收入保險料의 증가는 오히려 株式價格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非競爭의이거나 혹은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e.g. $P > P^*$) 超過利潤의 발생으로 인하여 收入保險料가 증가함에 따라 株式價格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보험시장이 경쟁적이나 아니면 비경쟁적이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S_{i,t} = a + b \Delta P_{i,t} + e_{i,t} \quad \dots\dots\dots (3)$$

여기에서

$S_{i,t}$ = i 보험회사의 t연도 평균주식가격(market equity value)

$\Delta P_{i,t} = [(P_{i,t} - P_{i,t-1}) / P_{i,t-1}] \times 100$

= i 보험회사의 t연도 보험료수입 성장률(%)

$P_{i,t}$ = i 보험회사의 t연도 수입보험료(direct premiums income)

$e_{i,t}$ = 오차(error terms).

韓國損害保險市場의 10개 上場會社에 대한 10년간(1981~1990) 자료²⁷⁾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의 결과를 얻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의 값은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3배수 범위 내에 위치하며, 비정상적으로 회귀분석모델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극단값(outliers)은 발견되지 않는다. 株式價는 단위가 원이고 보험료는 백만원 단위이며 수입보험료증감률(ΔP)은 백분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回歸分析은 9년간(1982~1990)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86년 이후 한국의 株式價는 각 보험회사의 財政狀況에 관한 情報에 기초하여 변동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투기적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기간을 두 기간(1982~1985 및 1986~1990)으로 나누어 각 기간에 대하여도 따로 回歸分析을 하였다.

위의 간단한 回歸分析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손해보험시장에서 株式價格의 變動은 收入保險料의 증감과 正의 關係(positive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의미있는(statistically significant) 관계를 보여준다. 즉 1982년에서 90년까지의 全體期間이나 1982년에서 85년까지의 部分期間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95%이상의 信賴度를 가지고 正의 關係를 보여주며, 주식이 투기적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던 1986년에서 90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정도의 信賴度를 가지고 正의 關係를 설명해 준다.

27) 보험료수입의 성장(ΔP)을 계산함으로써 한해(1981년도) 자료는 회귀분석을 위한 data에서는 생략되었다. 일부 보험사(대한재보험, 현대화재 등)는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이러한 회사들의 주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3)

기초자료에 대한 Summary Statistics (1982~1990)

변 수 (variables)	측정수 (n)	평 균 (Means)	표준편차 (Std.D.)	최소값 (Min)	최대값 (Max)
주식가(S)	90	20,123	16,806	3,596	54,788
보험료(P)	90	128,252	106,688	20,459	544,439
ΔP (%)	90	25.29	11.67	-10.35	59.33

(표-4)

回歸分析의 결과

從屬變數: 주식의 시장가격(S)				
기간(periods)		1982-90	1982-85	1986-90
독립변수 ΔP 의 계수 (coeff.)	estimate	484.60	62.18	336.28
	standard error	144.61	23.52	179.80
	t-value	3.35	2.64	1.87
회귀모델의 상관계수(R^2)		0.1132	0.1553	0.0679

따라서 한국의 손해보험시장은 非競爭的이며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適正保險料 以上の 保守的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손해보험산업의 전반적인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自動車保險, 火災保險 등 업종분야(business lines)별로 구분하여 保險料의 適正性을 검토하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實證的 分析의 結果

이상과 같은 실증적 분석의 결과에서 韓國損害保險市場은 상대적으로 높은 設立資本金 要件으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기존기업의 市場集中度도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며 기업의 성과면에서도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의 特殊性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經濟的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보험시장은 보다 경쟁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험회사의 支拂能力을 높이기 위하여 財政力이 약한 신규업체는 시장진출이 어렵도록 고액의 設立資本金 要件이 있으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요율도 協定料率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二重的인 정책으로 사료된다.

VI. 損害保險料率에 대한 政策方向

손해보험시장의 분석결과 料率에 대한 競爭政策이 요구되지만 完全自由競爭政策을 提案하는 것은 아니다. 資本市場의 개방과 앞당겨지는 金利自由

화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인하여 市場金利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 등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cash flow 언더라이팅 혹은 과열된 시장 점유 경쟁의 가능성도 예견되므로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料率自由化 및 競爭推進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험요율의 共同開發에 의한 勸告料率(advisory rates)을 산정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의한 개별적인 요율산정이 가지는 情報의 不正確性 및 限界性을 극복하고 危險共同化(risk pooling)의 핵심이 되는 大數의 法則을 최대한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각 보험사의 개별적인 요율산정비용보다는 中立의인 料率算定機關에 의한 공동개발비용이 평균적으로 낮기 마련이므로 비용절감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料率算定費用은 손실 및 비용 발생에 대한 과거의 자료가 없는 신규업체의 경우에도 市場進入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높은 設立資本金 要件이 가지는 진입억제 효과를 일부 상쇄해줌으로써 보험시장은 보다 전전한 경쟁으로 발전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립적인 요율산정기관에 의한 勸告料率 혹은 標準料率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간 自社の 營業料率을 자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料率競爭을 할 수 있다.

經營의 合理化에 따라 기업간 영업비용과 이윤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純保險料에 대한

標準料率의 산출 및 권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附加保險料(loadings)를 포함한 總營業保險料에 대한 標準料率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경쟁시장에서 과소한 부가보험료의 책정으로 純保險料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총보험료에 대한 標準料率算定 및 勸告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요율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실제 영업보험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⁸⁾

料率算定機關의 中立性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保險開發院에서 요율산정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운영비 조달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中立性 維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公共選擇理論에 의하면 정부의 規制(e.g. 요율의 공동개발)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할 수 있다. 게다가 開放化가 추진되고 있는 韓國生命保險產業에서 最低效率規模 및 적정한 企業數에 관한 각계의 연구발표²⁹⁾를 한 예로 보더라도 자금지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에 편견(bias)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989년도 生保市場을 기준으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연구결과는 適正企業數가 24개나 되는데 반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는 9~13개사, 그리고 국내생명보험회사의 자금지원

28) 보험약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표준요율과 보험회사의 실제요율을 비교하기가 곤란하지만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요율의 명시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어느 보험회사의 실제요율이 표준요율보다 크게 낮은 경우 보험가입자가 이러한 보험을 구입한다면 낮은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을 감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9) 지범하(1991), p. 75의 〈표-1〉을 참고하였는데, 보험산업의 경우 비용함수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으며 자기 자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성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연구결과일 수도 있다.

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는 7개사에 불과한데 이는 기존보험사들은 많은 기업이 새로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保險開發院이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標準料率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역학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전문인으로 구성된 消費者保護團體에 의한 자료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Clarke R.N., F. Warren-Boulton, D.D. Smith, and M.J. Simon, "Sources of the Crisis in Liability Insurance : An Economic Analysis,"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5(Summer 1988), pp. 367~395.
- D'Arcy Stephen P. and Neil A. Doherty, *The Financial Theory of Pricing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ntracts*(Huebner Foundation Monograph 15),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988.
- Finsinger Jorg. and Mark V. Pauly (editors), *The Economics of Insurance Regulation*, MacMillan Press Ltd., London, 1986.
- Harrington Scott E., "Price-Fixing and the Anti-trust Exemption : Fact vs Fiction," *Memo (Discussion in ARIA)*, August 1989.
- Jensen M.C. and meckling W.H.,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3(October 1976), pp. 305~360.
- Lacey Nels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operty-Casualty Insurance Industry : A Look at Market Equity Values and Premium Prices"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5 (1988 Summer), pp. 501~516.
- Lefkin Peter A., "Shattering Some Myths on the Insurance Liability Crisis : A Comment on the Article by Clarke, Warren-Boulton, Smith, and Simon,"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5.(1988 Summer), pp. 417~425.
- Lutgart van den Berghe, "(De)Regulation of Insurance Markets" ; Louberge Henri (editor), *Risk, Information and Insuran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Massachusetts, 1990. pp. 199~220.
- Shepherd William G.,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7th edition)*,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1985.
- Stigler G.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2 (Spring 1971), pp. 3~21.
- Winter Ralph A., "The Liability Crisis and the Dynamics of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5 (1988 Summer), pp. 455~499.
- 박승진, "보험시장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保險調査月報, 제14권 제12호 (1991.12.), pp. 6~16
- 양승규, "보험산업과 독점규제법," 韓國保險學會發表, 1991. 12.13.
- 조해균, "손해보험요율의 자유화와 그 대응방안", 保險開發研究, 제 3 호(통권 제 4 호), 1991.

조해균, “보험산업에 대한 競業政策의 방향에 관한 연구—적정경쟁시책의 방향,” 保險學會誌, 제33집, pp. 25~26.

조해균, “보험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Famy 교수의 보험시장론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21집, pp. 69~94.

지범하, “適正競爭과 生命保險產業의 競爭政策,” 保險開發研究, 제2호 통권 제3호(1991. 6. 30.), pp. 68~86.